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1. 12.(목)

인근 약국 없는 군부대·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

- 국군의료시설에서 군인, 군무원은 의사로부터 의약품 수령 가능 -

- 도서지역에서 선박 이용 시 수요 높은 멀미약(진토제) 취급 허용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군부대와 지방 중소공항 등 의약품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「약사법 시행령」 및 「특수장소*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」 고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·행정예고를 11월 12일(목)부터 12월 22일(화)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**(특수장소)** 열차, 항공기, 선박, 무약촌(도서·벽지·접적지역 중 약국 등 없는 지역) 등을 특수장소로 지정하여, 인근 약국개설자의 관리·감독하에 非 약사의 일정 의약품 대리 취급·판매(수여)를 허용

이번 개정은 국방부,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 개선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감사원 권고 등을 반영한 것으로, **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**

첫째, 국군의료시설에서 군무원에 대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다.

현행 「약사법 시행령」에 따르면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수령(의사 직접 조제 허용)할 수 있으나, 군무원은 허용되지 않았다. 앞으로는 **군인과 군무원 모두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 후 의약품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**,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, 군인과의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.

둘째, 격오지 군부대에서 보건의료분야 면허(의사, 약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) 보유 군무원은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.

그간 격오지 군부대는 원격진료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을 의무병이 대리 취급해왔으나, 최근 의무병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도 제한되고

있다. 이에 **군무원도 의사·약사·간호사·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해당 의약품 대리취급**을 할 수 있도록 하여, 격오지 군부대 내 의약품 공급과 사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

셋째, 군의관과 인근 약국 등이 없는 군부대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최근 군의관 감소로 군의관 미배치 부대가 증가하고, 군부대의 지리적 특성상 인근에 약국 등이 없어 가벼운 증상에 필요한 의약품 접근성도 제한되고 있다. 이에 **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부대 중 3km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부대**에서는 군부대장이 지정한 **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*을 대리취급**할 수 있도록 한다.

* **(안전상비의약품)**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해열진통제 3종·감기약 2종·소화제 4종·파스 2종 총 11개 품목

넷째,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지방 중소공항은 공항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과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입점이 어렵고, 입지 조건상 인근 약국 이용도 곤란한 상황이다. 이에 **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**에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가 **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취급**할 수 있도록 하여, 공항 이용객들이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발열 등으로 급하게 필요한 의약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.

다섯째, 도서·벽지 등에서 멀미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약국의 참여 제고를 위한 의약품 공급가격을 인상한다.

그간 도서·벽지 등 특수장소에서 소화제·해열진통제·지사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나, 선박 등 이용 시 수요가 높은 멀미약(진토제)은 취급 의약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다. 이에 **도서·벽지 등 특수장소에서** 진토제(멀미약)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.

아울러 특수장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약국이 실제 판매가격에서 15%를 할인하여 공급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해당 **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**하여 약국의 특수장소 의약품 공급 참여 촉진 및 의약품 공급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.

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「약사법 시행령」 관련 의견은 12월 22일(화)까지, 「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」 고시 관련 의견은 12월 2일(수)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,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.

< 의견 제출방법 >

○ **제출처**

- 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
 * 전화 : (044) 202-2491, 전자우편 : younie80@korea.kr

○ **기재사항**

-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의견)
- 성명(법인·단체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

<붙임> 약사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주요내용

<별첨> 1.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.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개정령안

담당 부서	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명철 (044-202-2490)
		담당자	사무관	강현진 (044-202-248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약사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주요 내용**

□ 개요

○ **(시행령 제23조)** 의약품은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, 예외적으로 의사의 직접 조제 허용 범위를 규정

○ **(특수장소 고시)** 의약품은 약사의 약국 內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나, 예외적으로 열차·항공기·선박·고속버스·무약촌*등 특수장소로 지정하여 인근 약국의 관리·감독하에 대리인의 일정 의약품 판매(수여) 허용

* 도서·벽지·접적지역 중 시·읍의 경우 3㎞ 이내, 면의 경우 2㎞ 이내에 약국·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

□ 개정 주요 내용

구분		현행	개정	비고
1	**국군의료시설 의사 직접 조제 허용**	군인	군인 **+ 군무원**	시행령안 제23조
2	**격오지 군부대 의약품 취급 대리인**	의무병	의무병 **+ 군무원*** * 의사·약사·간호사·응급구조사	고시안 제4조
3	**군의관 미배치 인근 약국 등 없는 군부대**	특수장소 아님	**특수장소 지정** **안전상비의약품 사용** **(부대장 지정 부대원)**	고시안 제2·4·5조
4	**약국·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없는 공항**	특수장소 아님	**특수장소 지정** **안전상비의약품 사용** **(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자)**	고시안 제2·4·5조
5	**도서 지역 등 취급 의약품**	소화제, 해열진통제, 지사제, 진통제, 진해제 등	기존 **+ 진토제(멀미약) 추가**	고시안 제·5조
	취급자의 대리인 공급가격(상한가)	실제 판매가의 15% 할인가	**약국 판매가**	고시안 제8조